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호순(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 교수)
- ▶ 집필진 : 권일남(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정주(모든학교 체험활동연구소 소장)
한도희(여성가족부 전문위원)
- ▶ 연구보조원 : 이희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인턴)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4
3. 연구내용	5
1) 청소년 시설현황	5
2) 청소년시설 운영 실태	5
3) 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4) 청소년시설 운영매뉴얼	6
4. 연구방법	6
1) 전문가 자문	6
2) 전문가 의견조사	7
3) 정책협의회	7
4) 워크숍 개최	8
제2장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9
1.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과정	11
1) 1단계: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	11
2) 2단계: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1991)	11
3) 3단계: 청소년기본법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	13
4) 4단계: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8년~2002년)	14
5) 5단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이후	15
2.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18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18
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9

제3장 청소년수련원 21

1. 청소년수련원의 개념 및 현황 23
 - 1) 청소년수련원의 허가·등록 23
 - 2)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 24
 - 3) 청소년수련원 운영기준 26
 - 4)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 27
 - 5)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운영위원회 28
 - 6) 청소년수련원 안전기준 28
 - 7) 청소년수련원 보험가입 29
 - 8)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29
2.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안 31
 - 1) 기본 및 전제조건 31
 - 2)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운영 현황 32
 - 3)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형태 33
 - 4) 청소년수련원의 주요 특성 이해 34
 - 5) 운영관리 38
3. 청소년수련원 운영 진단 46

제4장 청소년수련관 49

1. 청소년수련관의 개념 및 현황 51
 - 1)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51
 - 2) 청소년수련관 시설기준 52
 - 3) 청소년수련관 운영기준 53
 - 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53
 - 5)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53
 - 6) 청소년수련관 안전기준 54

7) 청소년수련관 보험가입	55
8)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현황(2011.12 기준)	55
2.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	56
1) 기본 및 전제조건	56
2) 운영관리	57
3. 청소년수련관 운영 진단	63

제5장 결론 및 제언67

1.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69
1)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향 모호성	70
2) 청소년시설운영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 부재	72
3)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의 중요성 부재	73
4)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구현 미비	74
5) 청소년시설(수련시설, 이용시설)간의 관계 재조명	74
6)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부족	75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76
1) 청소년시설의 목적, 개념설정 및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	76
2) 청소년시설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탐색	80
3) 청소년시설운영을 위한 청소년시설-지역사회중심 운영전략 수립	82
4) 청소년시설운영다각화를 위한 지원합리화 요구노력	83
5)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과제구현	84

참고 문헌87

표 목 차

〈표 Ⅰ-1〉 전문가 자문 구성 및 내용	7
〈표 Ⅰ-2〉 정책협의회 구성 및 내용	7
〈표 Ⅰ-3〉 워크숍 개최	8
〈표 Ⅱ-1〉 청소년전용시설 현황	12
〈표 Ⅱ-2〉 전국청소년회관 시설 현황	12
〈표 Ⅱ-3〉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원 기준	15
〈표 Ⅱ-4〉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원 기준(2012년 1월)	16
〈표 Ⅱ-5〉 청소년수련관 시대별 변화과정	17
〈표 Ⅱ-6〉 청소년수련원 시대별 변화과정	17
〈표 Ⅱ-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9
〈표 Ⅱ-8〉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
〈표 Ⅲ-1〉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수입예산, 청소년 이용률, 가동률)	30
〈표 Ⅲ-2〉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이용자수)	30
〈표 Ⅲ-3〉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전체종사자 수) ..	31
〈표 Ⅲ-4〉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수용정원, 시설규모)	31
〈표 Ⅳ-1〉 청소년수련관 설치율(2011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52
〈표 Ⅳ-2〉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수입예산, 청소년이용률, 가동률)	55
〈표 Ⅳ-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이용자수)	55
〈표 Ⅳ-4〉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전체종사자 수) ..	56
〈표 Ⅳ-5〉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수용정원, 시설규모)	56
〈표 Ⅴ-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수업시수 분석	80
〈표 Ⅴ-2〉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12. 2. 24 기준)	81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	4
【그림 Ⅰ-2】 청소년수련시설 분류도	5
【그림 V-1】 청소년수련시설의 발달과 한계	69
【그림 V-2】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와 한계	70
【그림 V-3】 청소년활동의 방향	73
【그림 V-4】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77
【그림 V-5】 청소년활동개념과 창의성 및 인성의 관계	78
【그림 V-6】 청소년활동의 개념요소와 위계	79
【그림 V-7】 청소년의 적응수준에 따른 활동지원 방향	79
【그림 V-8】 교육예산의 구성	83
【그림 V-9】 청소년시설의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8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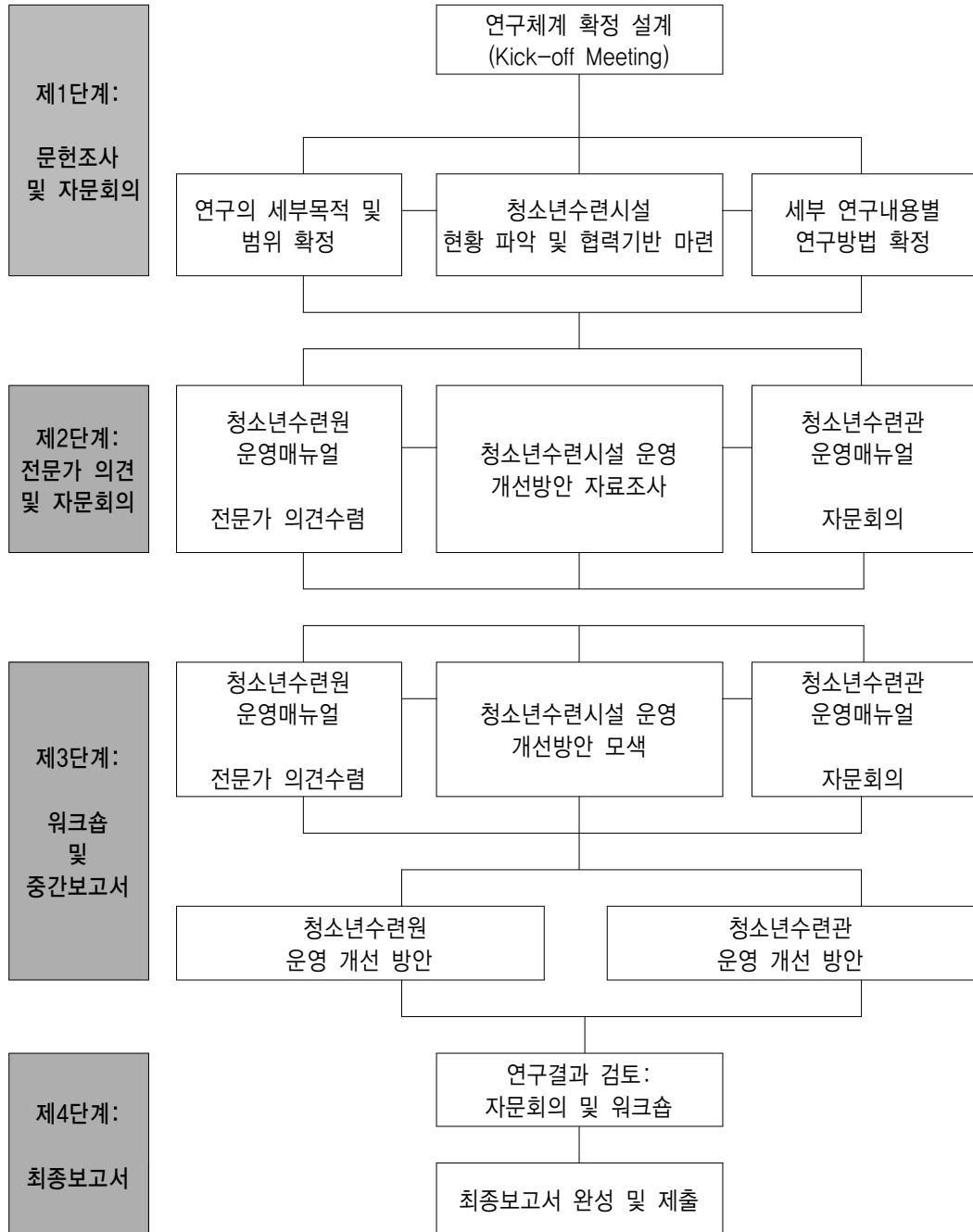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체험적 수련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시대적 요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시하여 시설운영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의 여가증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된 지 약 2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운영주체의 다양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운영지침이나 규정이 거의 없는 관계로 시설의 평가나 관리운영의 방향을 조율할 최소한의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성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그 동안 각종 청소년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매뉴얼이 없이 청소년수련시설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와 효율적인 운영의 한계를 지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수련시설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각종 수련시설에서 겪고 있는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꼭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기존의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실적 근거 위에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중 자연권 시설의 대표적 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생활권 소재 대표적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으로 국한하여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로 제안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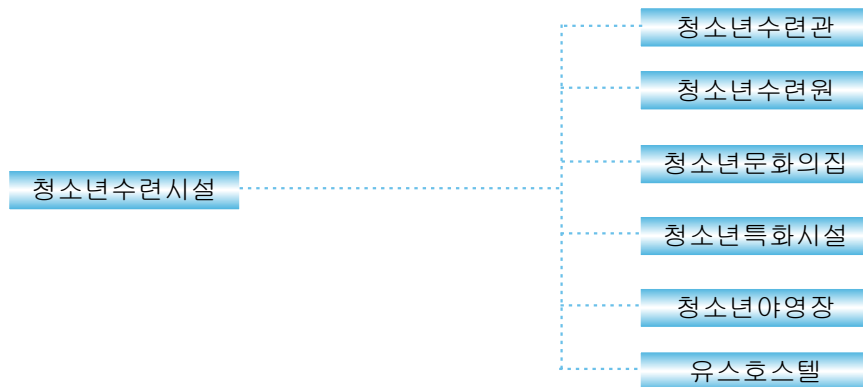
3. 연구내용

1) 청소년 시설현황

(1) 청소년 시설 유형별 현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해 놓았다. 청소년활동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몇 가지 분류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크게 자연권에 위치한 수련시설과 생활권 내에 설치한 수련시설로 대별할 수 있다. 자연권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으며, 생활권에 위치한 수련시설의 종류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대표적이다.



* 출처: 청소년백서(2011).

【그림 1-2】 청소년수련시설 분류도

2) 청소년시설 운영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현행 수련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개선점

청소년 수련활동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은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등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4) 청소년시설 운영매뉴얼

각종 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4. 연구방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가 자문,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정책협의회,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을 조사·분석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운영매뉴얼을 제시하였다.

1) 전문가 자문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문진은 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자문 내용은 첫째, 연구계획 및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둘째, 현장 요구반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 셋째, 연구결과 활용도에 제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표 I -1 전문가 자문 구성 및 내용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	연구 계획 및 연구 내용	공무원 1인 학계 2인 현장전문가 2인	
2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방안		
3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2)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연구보고서 목차를 중심으로 목차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섭외하여 자문을 받아서 의견조사 및 원고를 의뢰하였다.

3)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구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 추진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중간점검 및 내용 확인과 재조정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 I -2 정책협의회 구성 및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 고
1차	연구의 주요 내용 설정과 연구 추진방법 협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공무원 2명	3월	
2차	연구 중간점검 및 내용 확인과 재조정(필요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공무원 2명	6월	

4) 워크숍 개최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구성은 연구 관련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 1-3 워크숍 개최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 고
1회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모색	해당 공무원 2명 학계 전문가 2명 현장 전문가 2명	6월	

제 2 장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과정
2.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제 2 장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과정

1) 1단계: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

60~70년대의 청소년시설은 교육청 소관의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이 있었다. 이 중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담고 있는 시설로는 ‘청소년회관’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의 청소년시설은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이 있다. 이 중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담고 있는 시설로는 ‘근로청소년회관’을 들 수 있다.

청소년회관은 내무부 관할로 1970년 11월 서울청소년회관을 개관하였다. 이들의 건립목표에는 ‘일제에 항거한 선조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주체의를 고취하고 학생교양 증진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함’, ‘청소년의 국가관을 확립케 하고 근면성실하며 바른 정신자세로 협동·봉사하는 새 일꾼을 육성·지도함’이라고 명시하여 집단의식의 고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도서실과 자료실, 회의실, 강당, 공연장 등 정신교육과 강의를 위한 실내 활동시설 위주로 구성되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근로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전국 주요공단 지역에 설치한 시설로서 강당과 강의실, 도서실, 생활관 등의 교육시설과 예절실, 요리실 등의 취미교실 및 구판장, 휴게실, 이·미용실 등의 후생시설이 갖춰진 복지시설을 말한다.

2) 2단계: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1991)

체육부내 청소년국에서 1988년 발간한 ‘청소년전용시설 편람’에 의하면, 청소년육성법에 따른 청소년전용시설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 청소년전용시설 현황

구 분	청소년 아영장	심신 수련장	자연 학습원	청소년 회관	학생 교육원	학생 과학관	유스 호스텔	계
개소수	68	35	9	43	10	12	18	195

* 출처: 「청소년전용시설 편람」(체육부, 1988).

청소년육성법에 따른 청소년전용시설은 1988년에 총 19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현재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청소년전용시설은 청소년회관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회관’이란 기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총괄하는 시설명칭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신교육, 교양강좌, 예술제 등과 교양, 취미, 독서, 봉사활동, 클럽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전용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문교부, 내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시설을 영역별로 정리하여 새롭게 청소년전용시설로 정리하였다.

표 II-2 전국청소년회관 시설 현황

구분	청소년회관 (43개소)
서울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강동청소년회관, 문래청소년회관, 경희궁청소년회관, 보라매청소년회관, 서울시립청소년사업관, 도산회관, 올림픽청소년회관,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서울청소년회관,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살레시오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성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천상동복지관, 광명시민복지관, 의정부 시민회관, 부천성곡청소년회관, 수원기독회관, 수원청소년회관, 부천YMCA
부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동청소년회관
대구	대구직할시 종합복지관, 대구청소년회관, 청소년적십자회관
인천	청소년복지회관
광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원	어린이회관, 근로청소년회관, 태백근로청소년복지회관
충남	대전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전북	이리시 근로청소년회관, 전라북도 학생회관
경북	구미근로청소년복지회관, 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주	제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주도학생회관, 국제청소년의집

이 기간 중 청소년시설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민간사업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이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 250만평의 부지에 1989년부터 3년간 196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제17회 세계잡버리대회장이다. 대회장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과정활동시설, 편익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총 76종 10,538개의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대회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133개국에서 19,081명이 참가하여 52개 종목의 과정활동과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2).

3) 3단계: 청소년기본법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

청소년기본계획(1991. 06)에 따라 기존청소년전용시설은 청소년수련터전으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청소년수련터전은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되며, 생활권 수련터전에는 총 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하고 있다.

1993년 청소년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재정립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생활권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로 정리되었으며,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으로 정리되었다. 자연권 청소년수련터전은 ‘청소년신천지’, ‘국토탐사로’, ‘수련의집’, ‘통일청소년광장’, ‘수련마을’로 제시되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을 통하여,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전국 234개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정비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청소년중앙공원 조성의 핵심기능은 연구개발, 수련활동, 상담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이고, 조성계획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이고, 규모는 부지36만평, 건물 1만여 평이고 예산은 413억 원이었다.

둘째, 국립청소년수련마을건립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목적으로 국립자연권 종합수련시설건립하고, 조성계획은 1992년부터 1995까지이고, 규모로 부지는 14만평에 건물 5천여 평이고, 예산은 237억 원이었다.

셋째, 생활권 수련시설건립은 행정구역별 1개소씩 건립원칙으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을 두고 있었다.

넷째, 자연권 수련시설건립은 대자연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친구삼아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을 두고 있다.

다섯째, 유스호스텔 확충 및 기능 재정립으로 건전한 여행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과 국민의 교육시설로 육성, 국제유스호스텔 현장·규약을 반영한 유스호스텔 운영규정 제정·시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존 청소년시설의 정비 및 활용으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강·활용하고, 등록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4) 4단계: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년~2002년)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통하여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요구와 시대환경에 맞게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게 되었다. 이 당시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존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의 명칭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특히,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되었다. 더불어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은 대규모 자연권시설명칭인 ‘청소년수련마을’과 중·소규모 자연권시설인 ‘수련의집’이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합·변경되었다.

기존 생활권청소년시설 명칭이었던, ‘청소년수련원’이 자연권수련시설로 변경 사용되면서, 현장에 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가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공립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였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하였다.

표 II-3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원 기준

구 분	청소년수련관(대)	청소년수련관(소)	청소년문화의집
규 모	건물: 1,500㎡	건물: 1,500㎡	건물: 100~200평
기준사업비	100억 원	40억 원	2~3억 원
지원 기준	30억 원(국고)	20~28억 원(양여금)	1~2억 원
설치 기준	청소년인구 1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시·군·구별 1개소	기존 청소년수련실전환 및 공유휴시설활용

5) 5단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이후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 6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와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었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나누어지며,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년~2007년)상에는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및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둘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지원(읍·면·동 단위시설로 500여 개소 조성목표) 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사항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운영(청소년활동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 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과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11~2012년) 상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략적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확충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표 II-4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원 기준(2012년 1월)

구 분	기준사업비	지원 사업비(규모)		비 고
		재정자립도	지원율	
청소년수련관 건립	6,000	서울특별시 50%이상 30~50%미만 30%미만	30% 70% 80% 88%	· 부지확보 및 지원 사업비 초과 금액은 해당 지자체 부담 · 청소년문화의집 구조 변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 제외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신규건립은 지원 제외
청소년수련원 건립	7,00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200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1,200			
청소년야영장 건립	3,000			
유스호스텔 건립	5,000			
기능보강	시설별 기준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3년간 분할 지원

결론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시작이 100년 이상 이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근대 개화기 YMCA 수련장이며, 1920대 후반에 국내에 들어온 조선소년척후단(보이 스카우트)과 1930년에 들어온 조선소녀척후단(걸 스카우트)에서 설치·운영한 스카우트야영장 등이 그 시초로 보여진다. 해방 이후 스카우트야영장, 학생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 이후 부터는 청소년기본법상 시설명칭이 부여되어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으로 정리되었다. 199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으로 통합 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시설명칭이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및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통합·조정되었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표 II-5 청소년수련관 시대별 변화과정

청소년육성법 이전	청소년육성법	1993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6년 이후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전용시설 (청소년회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학생과학관, 학생극장, 청소년오락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으로 통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 포함)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 시설명칭이다. 이에 1991년 청소년기본계획(1992~2001)과 청소년기본법(1993)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전국에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주력 인프라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전신은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종합복지관’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시설들이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전용시설로 새롭게 정리되었으며, 그중 생활권내 전용시설인 ‘청소년회관’으로 명칭이 통합·조정되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기능과 내용이 보완되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로 정리되었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내에는 대규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중형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실’로 구분되었다.

표 II-6 청소년수련원 시대별 변화과정

청소년육성법 이전	청소년육성법	1993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6년 이후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유네스코청년원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전용시설 (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	수련마을	수련원	수련원
		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

이러한 시설명칭이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및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통합·조정되었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청소년기본법상에서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으나,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시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이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계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992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 현재 738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청소년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176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숙박을 통한 활동 지원시설인 청소년수련원 176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여행청소년 숙박지원시설인 유스호스텔이 121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38	176	215	176	43	121	7
공공	469	172	210	41	26	13	7
민간	269	4	5	135	17	108	0

* 출처: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자연활동을 주테마로 하는 숙박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청소년인구의 급감 및 지역경제여건에 따라서 수련관 설치를 유보하고 있음)의 시·군·구에서는 1개소 이상씩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일정한 시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최근 가족여행 등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수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73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은 215개소, 청소년수련관 176개소, 청소년수련원 176개소, 유스호스텔 121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청소년특화시설 7개소가 있다. 이 중 공공시설이 469개소이며, 민간시설이 269개소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로 보여 진다.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144개소, 강원도가 77개소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8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시도	구분	총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계	738	176	215	176	43	121	7
	공공	469	172	210	41	26	13	7
	민간	269	4	5	135	17	108	0
서울	계	59	33	16	2	0	3	5
	공공	52	31	15	0	0	1	5
	민간	7	2	1	2	0	2	0
부산	계	23	7	9	4	2	1	0
	공공	18	7	8	2	1	0	0
	민간	5	0	1	2	1	1	0
대구	계	12	5	5	1	0	1	0
	공공	11	5	5	1	0	0	0
	민간	1	0	0	0	0	1	0
인천	계	24	7	6	5	2	4	0
	공공	13	7	6	0	0	0	0
	민간	11	0	0	5	2	4	0
광주	계	11	5	4	1	0	1	0
	공공	11	5	4	1	0	1	0
	민간	0	0	0	0	0	0	0
대전	계	13	4	7	1	0	1	0
	공공	12	3	7	1	0	1	0
	민간	1	1	0	0	0	0	0
울산	계	9	1	6	2	0	0	0
	공공	8	1	6	1	0	0	0
	민간	1	0	0	1	0	0	0
경기	계	144	27	40	52	6	18	1
	공공	76	27	39	6	3	0	1
	민간	68	0	1	46	3	18	0
강원	계	77	14	26	14	5	18	0
	공공	50	14	25	5	4	2	0
	민간	27	0	1	9	1	16	0
충북	계	43	9	9	13	2	10	0
	공공	22	9	9	3	1	0	0
	민간	21	0	0	10	1	10	0
충남	계	46	7	11	13	3	12	0
	공공	25	7	11	5	2	0	0
	민간	21	0	0	8	1	12	0
전북	계	53	13	20	11	3	5	1
	공공	34	12	19	0	1	1	1
	민간	19	1	1	11	2	4	0
전남	계	44	12	11	10	6	5	0
	공공	35	12	11	4	4	4	0
	민간	9	0	0	6	2	1	0
경북	계	66	16	11	16	7	16	0
	공공	39	16	11	5	5	2	0
	민간	27	0	0	11	2	14	0
경남	계	71	13	15	26	4	13	0
	공공	33	13	15	3	2	0	0
	민간	38	0	0	23	2	13	0
제주	계	43	3	19	5	3	13	0
	공공	30	3	19	4	3	1	0
	민간	13	0	0	1	0	12	0

* 출처: 여성가족부(2011).

제 3 장

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수련원의 개념 및 현황
2.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안
3. 청소년수련원 운영 진단

제 3 장

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수련원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개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생활권 시설에 대비한 자연권 시설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연권과 생활권의 구분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숙박기능을 유무를 통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현재는 생활권내(도심권) 숙박기능과 종합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1) 청소년수련원의 허가·등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국가 및 지자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운영할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 허가 및 등록권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허가요건: 설치·운영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요건: 시설별 일람표, 운영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상용권 증명서류,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 사전검토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련시설 완공 후, 관할 지자체에 수련시설등록을 한 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공통시설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조건으로는 일상생활권, 도심지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이 청소년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설치기준에 있어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따르되, 주변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공통기준(수련원 관련)

－ 일반기준

- 입지(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구조: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 주변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단위시설·설비기준

- 실내집회장: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

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야외집회장: 무대, 확장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어야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공통기준(수련원 관련)(계속)

- 체육활동장: 체육시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련 공인규정 등을 준용함(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 및 무도장용 체육시설 제외함
- 수련의 숲: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장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특성화 수련활동장: 문화적감성함양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함양활동장, 봉사협력력정신함양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함양활동장, 전문적직업능력함양활동장, 국제감각함양활동장, 기타 특성화 활동장
- 강의실: 1실당 면적인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칠판·교탁·책상·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생활관: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화장실·샤워장·세면장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은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위생시설: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양호실: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
- 물품보관시설 및 방송설비: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수련시설안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개별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별기준

－ 청소년수련원

-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실은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강의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에 대하여 기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수련의 숲’의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원 운영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운영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대표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시설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운영 및 생활지도·시설관리운영·종사자교육 등은 별도 운영기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련활동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 수련활동 운영

-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 수련거리의 실시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생활지도

-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

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음주자 등 수련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수련관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용정원을 초과하게 운영하여서는 안 됨
-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됨

최근 2012년 1월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방안’(여성가족부)이 수립되었다. 이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실시 관련 **주말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 가족단위 주말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자연권 시설 중심)

－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원봉사 터전 의무적 가입 및 운영(수련시설종합평가 반영)

-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등 협약을 통한 관련 자원봉사 터전 등록
- 정기·장기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기능 추가 등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net) 개선

－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각 수련시설 규모별로 운영프로그램 수 의무화 추진(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2개 이상, 기타 시설 1개 이상)

4)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법적 조항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자의 배치 등)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자는 시설의 정원규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반영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조항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자연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의 특성상 상시적인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 소수의 청소년수련원에서 본 조항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자연권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시 기본안내서가 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 등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6) 청소년수련원 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안전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제출받은 안전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운영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둘째, 토목부분, 셋째, 건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포함)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7) 청소년수련원 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보험가입)에 따라 모든 청소년수련원은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대표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실태(2011.12 기준)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공공 41개소, 민간이 135개소이다. 청소년수련원은 대부분이 민간(개인, 단체)이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이용률은 전국 평균적으로 80% 수준이며, 시설가동률은 36% 수준이다. 수입예산의 경우 1개 평균 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수입예산, 청소년 이용률, 가동률)

시설 유형	구 분			청소년이용률 (%)	시설가동률 (실 운영)	시설가동률 (356)
	합계	자체수입	보조금			
청소년수련원(총괄)	120,603	97,540	23,064	80.6%	35.7%	18.3%
청소년수련원(개별)	685	554	131			

* 출처: 2010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보고서.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이용인원은 1개소 평균 3만 명 수준이며, 대부분 청소년수련원의 전문 프로그램에 참고하고 있다.

표 Ⅲ-2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이용자수)

시설 유형	이용자 수(연인원, 천명)								
	합 계			청소년			일반(성인/유아)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청소년수련원(총괄)	6,702	4,792	1,910	5,401	4,538	864	1,301	255	1,046
청소년수련원(개별)	38	27	11	31	26	5	7	1	6

* 출처: 2010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보고서.

청소년수련원의 1개소 당 14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90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12명 내외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전체종사자 수)

시설 유형	운영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수(일)	전체종사자 수(명)	실제 배치			
				계	1급	2급	3급
청소년수련원(총괄)	2,423	32,949	2,157	555	101	290	164
청소년수련원(개별)	13.8	187.2	12.3	3.2	0.6	1.6	0.9

* 출처: 2010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보고서.

청소년수련원의 1개소당 평균 수용정원은 570명, 건축연면적 10,170제곱미터로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적으로 학교단체를 주 고객으로 하는 대규모 시설로 밝혀졌다.

표 Ⅲ-4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수용정원, 시설규모)

시설 유형	수 용 정 원				시설 규모	
	계	비숙박	숙박정원	야영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청소년수련원(총괄)	100,421	1,360	75,913	23,208	9,495,071	1,789,864
청소년수련원(개별)	570.6	7.7	431.3	131.9	53,949	10,170

* 출처: 2010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보고서.

2.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안

1) 기본 및 전제조건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설정하고, 운영방식과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서 기대되는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적절한 운영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관련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식과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의 실제 운영상황에서 수행되는 기능과 운영방식의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의 [별표2]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의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기준으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으로 볼 때에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숙박을 하며 수련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청소년의 생활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련활동의 내용이 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성화 수련활동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별 청소년수련원별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화는 각 청소년수련원의 입지 및 주변환경, 청소년수련원내에 설치한 활동시설, 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주체의 관심사와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은 도심에 인접하여 설치된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단체 숙박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단체의 숙박형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학교단위의 일일현장체험과 학교 주5일 수업제의 완전 실시에 따른 주말 가족단위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교단체 수련활동이 중심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청소년수련원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형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수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①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당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과 읍·면·동당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스호스텔, 야영장, 특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수련원에 설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②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③항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중에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가 공공분야의 참여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민간참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민간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거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숙박시설을 갖춘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은 법률에 의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민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 수련시설 개보수에 대한 청소년육성기금 융자 지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맹영임 외, 2010: 15).

청소년수련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투자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이 투자하여 설립한 민간 시설이나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의 운영과 더불어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민간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설투자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자의 유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 기대되는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청소년수련원의 주요 특성 이해

청소년수련원의 법적인 기능과 설치 및 운영형태에 따라서 예상되는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청소년수련원의 주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주된 이용자와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학교수련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 특성상 청소년들이 개인이나 소규모 동아리로 그리고 주중에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학교수련활동은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학년 또는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활동이다. 이 학교수련활동에 맞추어 개발된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은 숙박형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이 학교 단체로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1박 2일 내지 2박 3일의 숙박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학교단체로 일일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숙소를 활용하는 등 학교 단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이다.

방학 기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가족단위 체험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기업연수, 성인단체, 유아캠프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단체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게 된다.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들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입지나 청소년들의 접근성, 이용방식 등에서 도시에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일상적인 강좌 프로그램, 자율적인 시설 및 공간 이용,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구체적인 업무를 구성할 때에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기대되는 사항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원의 기관 성격에서 공공시설로서 특성과 민간시설로서의 특성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과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크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수련원은 당연히 공공시설로서 특성을 갖게 되며, 그에 따른 공공적인 책무를 갖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로서의 책무를 갖는다.

반면, 민간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시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나 운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수련활동이 국가가 정한 제도와 정책에 의하여 진흥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수요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하는 민간재(private goods)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의 경영 목표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의 설립주체에 따라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기능이나 사업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의 경영목표와도 직결된다.

공공시설의 경영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 증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비용 효율성과 경영성과 관리 등과 같은 자생적인 경영능력 확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수익성의 제고가 경영 목표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수익성이 추구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 주식회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수익성 추구는 시설 경영에서 일차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막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지나친 수익성 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익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홍보경쟁이 과열화되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맹영임 외, 2010: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으로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전문지도인력 확보나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익성의 확보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는 필수적이다. 다만,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원 중에서 공공시설의 경우에 공공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간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성을 통해서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넷째, 청소년수련원은 국가정책으로 진흥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시설설치기준, 시설운영기준, 안전관리기준, 보험가입,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관련 법령에 의해 권장되거나 강제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안전점검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 민간 청소년수련원의 시설개보수를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운영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관리감독 업무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각종 제도적인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원의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시설 및 환경, 전문 인력,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에서 청소년 및 프로그램 영역, 조직 및 인력 영역, 시설 및 안전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 간 평가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시설 안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에 조직 및 인력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진구·김기현·모상현, 2011: 198).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안전 영역의 점수는 81.54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조직 및 인력 점수는 63.05점 이었고, 청소년 및 프로그램 영역의 점수는 65.4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및 안전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지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이나 프로그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단위 프로그램의 수와 정규직원 확보율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진구·김기현·모상현, 2011: 200-2002).

청소년수련원의 정규직원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부족은 결국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문제점으로 직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인력과 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시설환경 및 활동장비의 개선, 청소년지도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개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청소년수련원에서 지도인력과 프로그램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필요성도 크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원장 또는 운영대표자가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장이 조직, 인사, 사업, 회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탁법인의 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원장이나 운영대표자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운영법인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원장 명의의 공문발송이나 어렵고, 청소년수련원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생겨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법인과 동일체인 경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에서 여러 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시설의 장이나 운영대표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의 장이나 운영대표자에게 실제적인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제 규정과 업무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학교 주5일제의 전면 실시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이 학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학교교육 정책에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진로활동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말 가족단위 체험활동 및 소규모단체 이용자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5) 운영관리

(1) 기관운영

청소년기관운영이란 청소년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과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이며 효과성 있게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6: 14). 이는 청소년기관이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주로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기관 경영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

경영은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6: 13). 경영의 과정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요시한다. 효율성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금, 인력, 장비 등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효과성은 수립된 목표 달성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수행하는 책임으로서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정의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화란 수립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과업을 분류하고 누가 수행할지 등을 정리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휘는 목표달성과 과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통제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검토하여 시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기관 경영자는 청소년수련원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등과 같은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영자의 경영 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는 청소년수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간사업계획, 시설운영을 위한 제 규정 등의 형태로 갖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개선과 청소년수련활동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원의 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의 기관운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원이 지향하는 비전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여 전략과 사업내용으로 편성하며, 그리고 이를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매년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수행해야 할 사업을 편성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하여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정한 것이 규정이다. 청소년수련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과업별 업무의 분장, 과업수행을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제 규정으로는 시설운영, 회계 및 예산,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복리후생, 사무관리, 시설 및 물품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설치 주체나 운영 형태가 어떠한 간에 운영대표자, 조직체계, 회계 관리, 사업운영 등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수련원이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수련원이 특정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청소년수련원과 운영법인이 동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운영법인의 규정과 구별되는 청소년수련원의 독자적인 규정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업무관리에서는 업무처리 과정과 산출 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와 자료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청소년수련원의 각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회계 관리는 회계처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고, 각종 수입 및 지출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수련원의 자체적인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 시설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 평가와 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는 청소년수련원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진단하며, 경영목표 및 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자기 진단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등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지속적인 청소년수련활동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이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지도인력 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청소년 이용자관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하는 시설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관에 비하여 청소년의 이용방식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용대상이나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의 특성상 숙박형 프로그램 참여자, 숙박시설 이용자, 활동시설이용자, 당일체험활동 이용자, 개별이용자, 단체이용자, 가족단위 이용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중심의 이용자 확보를 통하여 청소년이용률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관리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원 경영자의 전문성 함양과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영자 또는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대표자의 전문성은 법적인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의 경영에 관한 전문성도 필요하게 된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영자 또는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개별 청소년수련원의 발전이 사회 환경변화나 청소년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와 사업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경영자는 사회 환경변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같은 정책사업, 청소년박람회나 지도자대회, 국가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시행 등 청소년활동 분야의 이슈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2) 조직 · 시설

조직 및 시설관리에서는 크게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와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및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조직 관리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를 재설계하고 구성원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하며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과정을 말한다. 업무조직관리, 인력관리 등의 운영과 개선이 포함된다.

시설 및 안전관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활동시설 및 장비 관리, 숙식 및 편의시설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조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업무조직관리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원의 업무조직 관리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당하는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 전문기관으로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업무조직을 구성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관리는 청소년수련원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근무안정성을 높여서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 안정성을 높여서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할 청소년지도사를 법정배치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개선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 보험의 가입 등과 같은 행정절차 및 관련 문서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수련활동에 사용되는 활동시설과 활동장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유지 보수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활동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활동장비의 수량파악 및 작동상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활동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수련원이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숙박시설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비품에 대한 청결유지, 위생상태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시설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행정기관 및 소방서 등 외부기관의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비상사태 대비한 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종사자들이 숙지하게 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청소년폭력 및 성희롱 등과 관련된 사전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성범죄 조회 등과 같은 사전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지침 및 대피요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안내문과 표식을 적재적소에 게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이용자 관리는 청소년수련활동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과 이용자 관리를 체계화하여 경쟁력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영역이다.

그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설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미흡, 천편일률적인 모방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회변화 및 청소년의 욕구 변화에 따른 개발 및 적용의 미흡,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맹영임 외, 2010: 16).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은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특성화·전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반복 이용자들도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주 이용대상인 학교단체 및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의 주 이용자인 학교의 교육환경이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를 계기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와 창의적체험활동 실시에 따라서 학교수업일수 및 교과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같은 학교행사활동이나 학교밖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프로그램에서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청소년폭력 및 자살,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 및 사회적 역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관련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청소년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청소년수련원마다 입지 및 시설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특성화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설공간과 장비, 지도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시에 대폭 개편하기 어렵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성화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시설 특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에는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매뉴얼화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체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위 프로그램 별로 진행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서 형태로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정리하여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환경 및 활동장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체계성 등 많은 요소가 관련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요소를 정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참여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연계 · 협력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여러 개인과 단체, 조직 등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활성화는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서비스 공급자인 청소년수련원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자인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서 서비스의 공급자인 청소년수련원과 서비스 수요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 특성상 연계 · 협력은 홍보와 마케팅이 중심이 될 것이며,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활성화는 홍보 및 마케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므로,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수요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은 물론 청소년수련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홍보활동, 청소년수련원 인근의 지역사회 및 지역조직들과의 협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마케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망을 결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조사, 상품화계획, 판매촉진,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시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이 학교단체를 비롯한 숙박형 단체

활동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운영방식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마케팅의 개념이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으로까지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영리조직의 마케팅이 이윤극대화를 지향한다면, 청소년기관의 마케팅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지향하게 된다.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은 결국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원의 마케팅에서는, 최근의 마케팅 개념에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어, 인간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하고 인간 지향적인 사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의 홍보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홍보가 마케팅과 구분되어 사용될 때, 홍보는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조직이나 집단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이미지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홍보는 홍보주체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홍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수행할 하나의 기능으로서 홍보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알리고, 이해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이용하고 지지하게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6: 242).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에서는 청소년사업의 수행을 위한 참가자 모집 등을 위한 홍보보다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과 그로 인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가치나 효과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홍보매체들이 다양하게 발전되어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의 효과는 청소년수련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선정된 매체가 홍보대상자들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맞아 떨어질 때 극대화된다. 즉, 홍보대상자들에게 적합한 홍보매체와 홍보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홍보 대상자들의 정서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메시지 내용을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6: 248).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에서는 그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와 홍보 메시지 작성 등과 같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서 지역사회 및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 및 조직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형성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수련원의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협력은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시설에 비하여 그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 시설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협력은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인력 확보, 사회공헌사업 수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 조직 및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은 상호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조직 및 학교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공식화된 연계협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연계협력으로 수행할 구체적인 과업이 있을 때 실효성이 있게 된다.

3. 청소년수련원 운영 진단

청소년수련원의 역사는 20세기 초 YMCA 운동을 통해 들어온 캠프활동이 시초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자연권 캠프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배양해 왔다.

광복이후 대한민국 발전 및 역사적인 필요성 등과 혼재되어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은 비약적으로 그 수가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박정희 정권시설 반공정책을 청소년에 대입하면서 충효 및 반공정신 등 함양을 위한 학생수련원을 개원·운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간부학생들의 집중 정신수양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부터 간부학생 중심의 수련활동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및 민간 중심의 수련시설(자연학습원, 심신수련원 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학교 제7차 교육과정 도입 등과 맞물려 ‘학생수련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 되었다. 반면,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면서 원론적인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1991년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국가정책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정책 속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은 자율성이 결핍된 집체적인 활동이 아닌 순수한 체험활동을 핵심을 담아 내고 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하나로 자연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계승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포착되기 시작되었다.

첫째로 자연권수련시설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시기가 도래하였다. 수십 년을 학교단체 중심으로 한 수동적 청소년활동의 한계성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학교가 주5일제수업 전면도입 등에 따른 학교단체활동에 추진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다. 수업일수 축소, 학교 외부활동에 소극성, 집단 활동이 아닌 소그룹활동 선호 등으로 기존 대형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선호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수요 및 소규모 체험활동 수요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체질전환에 대한 무딘 감각적 한계에 도달해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원 운영기관 및 단체(개인)의 비 전문성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최근 몇몇 국립 및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들이 청소년활동시설의 핵심 전문 인력 보유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있어서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국의 대부분 청소년수련원들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시설환경 및 가격단가 경쟁으로 시설을 질을 가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부재하다.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10년간 민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소홀하였다. 정책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한정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왔다. 몇 년 전 까지 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되어 왔던 청소년육성기금 융자 및 인턴인력지원 등의 사업도 폐지된 상태이다.

제 4 장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수련관의 개념 및 현황
2.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
3. 청소년수련관 운영 진단

제 4 장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수련관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 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있어서,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시설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10년부터는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투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표 IV-1 청소년수련관 설치율(2011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비숙박	연면적(m ²)
합 계	228	168	73.7%
서울	25	33	132.0%
부산	16	7	43.8%
대구	8	5	62.5%
인천	10	7	70.0%
광주	5	5	100.0%
대전	5	3	60.0%
울산	5	1	20.0%
경기	31	25	80.6%
강원	18	12	66.7%
충북	12	9	75.0%
충남	16	7	43.8%
전북	14	13	92.9%
전남	22	11	50.0%
경북	23	15	65.2%
경남	18	12	66.7%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

*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1).

2) 청소년수련관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공통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조건으로는 일상생활권 도심지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이 청소년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설치기준에 있어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따르되, 주변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의 개별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및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3) 청소년수련관 운영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운영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시설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운영 및 생활지도·시설관리운영·종사자교육 등 별도 운영기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수련활동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서는 법적 운영기준 이외에 해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2012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내 운영활성화 관련 조항을 통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4)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3급 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기본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5)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반영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청소년수련관 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안전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받은 안전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운영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둘째, 토목부분, 셋째, 건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포함)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7) 청소년수련관 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보험가입)에 따라 모든 청소년수련관은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현황(2011.12 기준)

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공공 172개소, 민간이 4개소이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반면, 민간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은 전국 평균적으로 60% 수준이며, 시설가동률은 100% 수준이다. 수입예산의 경우 1개 평균 1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중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5억 원 수준(40% 수준)이다.

표 IV-2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수입예산, 청소년이용률, 가동률)

시설 유형	구 분			청소년이용률 (%)	시설가동률 (실 운영)	시설가동률 (356)
	합계	자체수입	보조금			
청소년수련관(총괄)	195,523	113,409	82,114	60.4%	108.3%	93.5%
청소년수련관(개별)	1,111	644	467			

* 출처: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인원은 1개소 평균 14만 명 수준이며,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의 전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일반(성인, 유아)의 이용도 9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이용자수)

시설 유형	이용자 수(연인원, 천명)								
	합 계			청소년			일반(성인/유아)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소계	프로그램 이용	단순이용
청소년수련관(총괄)	40,472	28,969	11,503	24,463	17,893	6,571	16,009	11,077	4,932
청소년수련관(개별)	230	165	65	139	102	37	91	63	28

* 출처: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청소년수련관의 1개소 당 74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15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18명 내외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자 배치에 있어서도 1개소 당 6명 정도의 전문가를 선발·배치하고 있다.

표 IV-4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전체종사자 수)

시설 유형	운영프로그램 수	시설 운영일 수(일)	전체종사자 수(명)	실제 배치			
				계	1급	2급	3급
청소년수련관(총괄)	13,062	55,455	3,145	1,078	204	691	183
청소년수련관(개별)	74.2	315.1	17.9	6.1	1.2	3.9	1.0

* 출처: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청소년수련관의 1개소 당 평균 수용정원은 673명, 건축연면적 5,531제곱미터로 대단위 생활권 수련시설로 밝혀졌다.

표 IV-5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수용정원, 시설규모)

시설 유형	수 용 정 원				시설 규모	
	계	비숙박	숙박정원	야영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청소년수련관(총괄)	118,594	107,404	9,990	1,200	2,624,749	973,427
청소년수련관(개별)	673.8	610.3	56.8	6.8	14,913	5,531

* 출처: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

1) 기본 및 전제조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있어서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청소년수련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을 시작으로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다가 2010년부터는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지원되고 있다.

2) 운영관리

(1) 기관운영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운영기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시설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운영 및 생활지도·시설관리운영·종사자교육 등 별도 운영기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수련활동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수련활동 운영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고,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음주자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청소년수련관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용정원을 초과하게 운영하여서는 안 되고,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서는 법적 운영기준 이외에 해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2012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내 운영활성화 관련 조항을 통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시간은 주말은 개관을 의무로 하고, 평일은 22:00시까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평일 오후(15시~22시)에 성인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성인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은 지양한다.

청소년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은 주기적인 청소년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시설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반영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조직·시설

청소년수련관의 기본 및 전제조건으로 첫째,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3급 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기본적으로 배치하여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공통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조건으로는 일상생활권, 도심지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이 청소년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설치기준에 있어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따르되, 주변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의 개별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및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시설·설비기준으로 실내집회장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체육활동장은 체육시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련 공인규정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리고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 및 무도장용 체육시설은 제외되어야 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장은 문화적감성함양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함양활동장, 봉사과 협력정신함양 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함양활동장, 전문적직업능력함양활동장, 국제감각함양활동장, 기타 특성 화활동장이 있어야 한다.

자치활동실은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생시설은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은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

물품보관시설 및 방송설비는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수련시설 안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개별기준의 기준은 면적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집회장은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활동장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치활동실은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특성화 수련활동장은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상담실은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휴게실은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위생시설은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되어야 하고, 지도자실은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기타시설은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수용정원은 ‘체육활동장’, ‘특성화 수련활동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안전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받은 안전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운영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는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토목부분, 건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세부사항으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포함)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보험가입)에 따라 모든 청소년수련관은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프로그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운영기준)에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활동 운영은 수련거리 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고,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방안’이 수립되어 보급되었다. 그 내용은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 평일 낮 시간대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공공시설 1시설 2개 학교 이상)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주말 프로그램 개발·활성화로 가족단위 주말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자연권 시설 중심), 생활권 시설은 특성화 주말체험프로그램 상설 운영(2개 이상)한다. 국가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가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연계’, ‘주말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업무를 담당토록 조치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원봉사 터전 의무적 가입 및 운영은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등 협약을 통하여 관련 자원봉사 터전으로 등록하고, 정기·장기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기능 추가 등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net)를 개선한다.

청소년동아리 운영 확대를 국가지원 동아리 외에 시설별 자체 동아리를 운영(생활권수련시설 시설별 5개 이상)하고, 동아리 규모, 기간, 활동계획 등 수련시설에 적합한 동아리 운영매뉴얼 개발과 시설 동아리 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수련시설 규모별로 운영프로그램 수를 의무화하여 추진(수련관·수련원 2개 이상, 기타 시설 1개 이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편성 시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능과 정체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전체사업의 30%이상 사업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목적사업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청소년수련관 이용활성화를 목표로 프로그램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의 15%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인력과 예산이 운영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적사업 부서의 근무자는 지역 및 지역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활동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 및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 계획 시 모든 프로그램편성은 청소년들의 생활주기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시험기간, 학교 축제기간, 수학여행, 방학 등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들을 미리 체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과 아울러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권일남 외, 2007).

프로그램 편성은 목적사업외에 학교연계 프로그램(CA활동 등), 특성화프로그램, 특별 프로젝트 사업, 수익사업관리(평생교육, 생활체육), 주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야하고, 세부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청소년현장체험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계·협력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지역사회 및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 및 조직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협력관계 형성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수련관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협력으로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인력확보, 사회공헌사업 수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역교육청 및 학교,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군·구 청소년담당과장 주관 하에 주기적인(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관계기관, 시설, 단체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수련시설 홍보 및 청소년 참여 유도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지역사회 조직 및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은 상호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조직 및 학교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공식화된 연계협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연계협력으로 수행할 구체적인 과업이 있을 때 실효성이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관 홍보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홍보, 프로그램 안내, 주말 및 특화프로그램 홍보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학교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내 언론사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기사를 통해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소년수련관 운영 진단

청소년수련관은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20년이라는 기간 내 빠르게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 기반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별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선도적인 가치와 내용을 시설·장비를 반영한 결과, 유사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과는 차별화된 우수한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시설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결과 질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향후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핵심 사업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일)이 미약하다. 이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인프라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자체 예산확보 문제와 연계된다고 보여 진다. 나아가,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의 차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떨어지면서 지자체차원의 지원조직 및 인력투입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가 수시로 바뀌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부처별 특성반영(문화관광부: 문화예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상담, 보건복지부: 저소득 청소년 복지 및 성보호)과 통합적 활용을 모색하면서 시설의 본 목적을 간과하고 청소년활동이 아닌 청소년상담, 복지, 보호 등 다양한 별도의 사업 등을 탑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욱더 청소년수련관의 본 목적과 함께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여타 시설과의 소통 부재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이 소속단체 및 지역적 한계에 묶여 고립되어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수한 운영사례의 발굴과 이에 대한 발 빠른 정보공유 채널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청소년수련관이 전문 청소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및 협의회, 인력 등과의 소통이 부재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학교 등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향후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시설로의 운영에 대한 질적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대표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하지만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특성·조직·예산·인력 등 다양한 운영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청소년수련관 간 운영의 질이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준이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적 운영표준화 및 질 관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도시 지역 청소년수련관과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프로그램 수 및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운영환경의 열악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대부분이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설 설치에 있어서 민선 지방자치제의 특성상 크고 화려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큰 반면,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위탁 시 참여시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본 시설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성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수익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 등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성은 곧 어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인다. 특히 청소년지도력의 역량은 곧 청소년수련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측면을 볼 때, 우수한 청소년지도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지도인력의 조기 이직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 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청소년지도인력이 원할 때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강화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적 측면에서 볼 때, 개별 청소년수련관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시설인지에 대한 부족과 함께 시설이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더하여 시설 운영자적 측면보다는 지역청소년에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더욱 필요로 한다.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비전 제시 등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 청소년수련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세상에 탄생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인간으로 한다면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성장기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허술한 게 현실이다. 이에 전국의 많은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허약하고 나약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대책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로운 전망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개척하려는 능동적 사고와 의지도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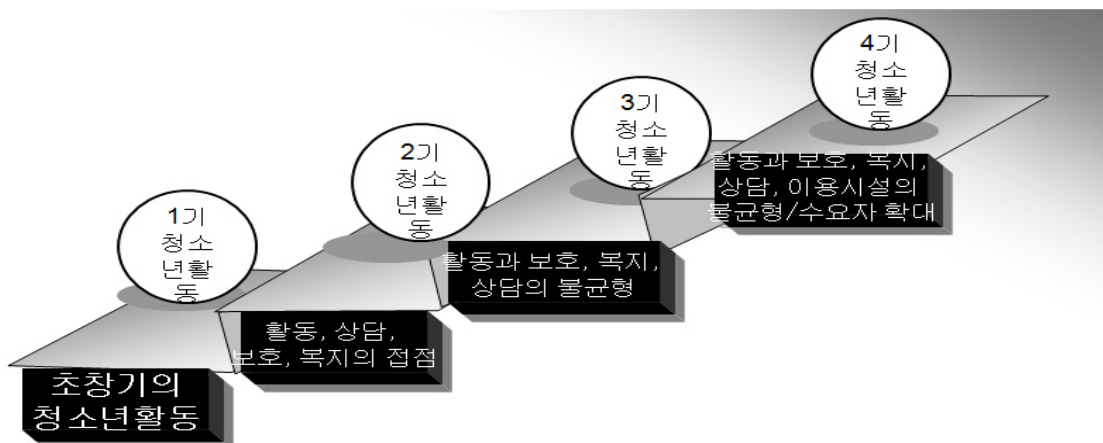
1.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제 5 장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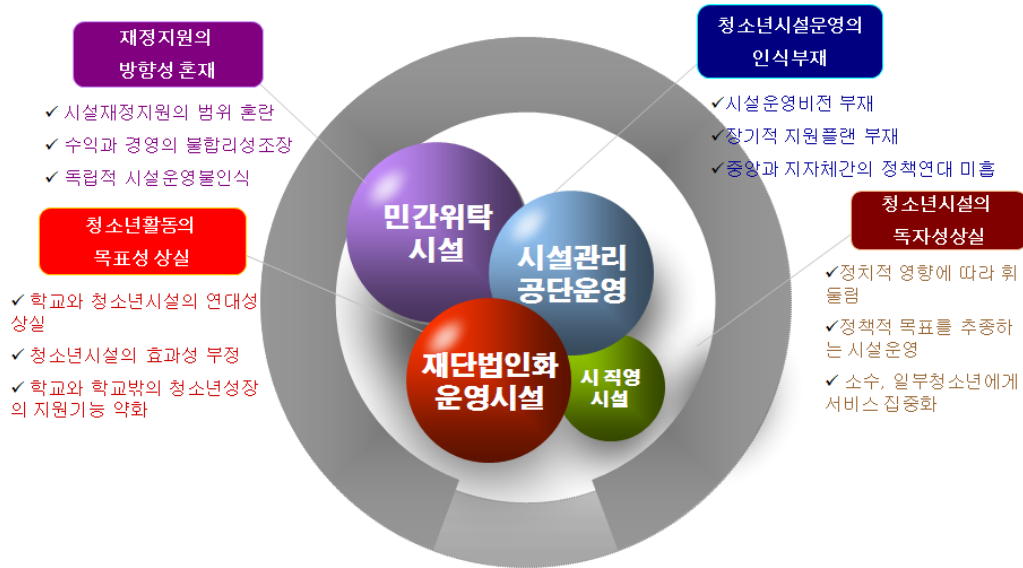
1.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은 초기목적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취미개발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은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었다(청소년백서, 1999:247). 당시의 청소년들은 실생활에서 느꼈던 체험기회부족과 여가생활의 불확실성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는 단기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그림 V-1】 과 같이 성과가 큰 만큼 제도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림 V-1】 청소년수련시설의 발달과 한계

오늘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하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 후 운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림 V-2】에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방치하였다. 사실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체험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는데 합리적 모형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림 V-2】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와 한계

【그림 V-2】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독립적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미래지향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담보해 내는 길은 곧 청소년활동의 안정적 토착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이끌지 못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거론해 보고자 한다.

1)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향 모호성

1992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청소년시설의 설립과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커다란 변혁을 갖게 되었다.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머물던 청소년들의 활동수준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지도자에게 활동터전의 근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보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끄는 유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큰 진보를 이루었다.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확장은 내적으로는 청소년활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열정을 체계화하여 자발적이고, 자원적 활동을 이루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직업인으로서의 전문화된 열망과 가치를 갖게 하여 적어도 청소년활동만큼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유용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초기 시설인프라의 확충이라는 단순명제의 도입은 청소년에게 활동의 다양성 확보와 체험기회 확대제공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적 요소로 규정하여 청소년문제해결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출발점은 학문과 정책적 토양이 서로 굳건한 배양토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많은 한계로 작용하였다.

초기의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적 참여기회부족이라는 대명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순한 체험기회증진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청소년의 문제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관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무자들의 혁신적 사고에 의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날 가장 큰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결정자(국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와 지역사회주민의 식견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이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은 미미하였기에 역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적이고 자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모든 것을 표로 여기는 의원결정자의 단기성과주의적 태도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보호, 복지사업 그리고 소외청소년, 부적응청소년 등과 같은 행정성, 선심성, 결과 지향적 사업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이 부재하다는 판에 박은 표현은 결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성과지상주의적 관점으로 내몰았고 보여주기식 행사로 청소년의 이용률 높이기, 보호·복지수혜자를 위한 무제한적 퍼주는 활동으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과 사업은 비용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커다란 행·재정적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결정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입지적 인식과 운영방향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낮에 청소년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재충전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수준 높은 판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그만큼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원과 운영을 조장하는 정책결정자의 의미 있는 책무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수련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다면 청소년시설의 본연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의 비전을 담보해내기는 불가능하다.

2) 청소년시설운영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 부재

실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가장 큰 고민은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점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간의 개념이 혼란스러우면서 청소년시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나타나 있다.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청소년활동진흥법).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법적인 의미이자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지향적 의미일 뿐 근본적으로 청소년활동이 수반해야 할 명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많은 시각은 학교교육과의 대비적 관점에서 지·덕·체를 함양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컸다. 물론 작위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발달이라는 관점, 청소년성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 등이 혼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보장하거나 갖추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의미를 【그림 V-3】과 같이 두고자 하였다.



* 자료: 권일남 외, 2011.

【그림 V-3】 청소년활동의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나 개념을 명료화하지 못하는 시설운영자의 사고는 청소년활동의 궁극적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이기도 하며 실제 수행하는 활동프로그램의 성과를 양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의 중요성 부재

청소년활동시설의 현장에서 활동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청소년활동을 수련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던 시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청소년분야와 학교교육분야의 연대강화는 오히려 청소년활동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12월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교의 지식중심교육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문화되어 있었던 창의적 재량활동의 변혁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에게 창의적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영역에서의 활동이 강화되는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경쟁력 약화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표방하였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일반 시설(박물관, 도서관 등 청소년이 용시설 및 기업과 관련 단체 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차별성을 보기가 어려워 결국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은 평가 절하되는 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기되지 않는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은 표면화되기 어려우며 시설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구현 미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의 특성화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에 대해서는 특성화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였으며 주된 분류의 관점에서 수영장을 갖춘 시설, 수영장이 없는 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곧 시설운영을 하거나 시설지원을 함에 있어 자립시설과 미자립시설로 분류되어 미자립시설은 나름의 시설특화를 도모하여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미디어정보활동, 성교육센터, 천문, 직업체험, 상담, 복지시설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화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자립시설의 경우는 시설경영의 자립에 최우선을 두었으나 재정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는 곧 청소년수련관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제공과 서비스구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피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운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운영자의 고민을 해소하는 정책의 과감한 변화는 일찍이 요청되어져 왔으나 사회복지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사회복지에 비해 낙후된 재정적 지원이나 시설운영의 한계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5) 청소년시설(수련시설, 이용시설)간의 관계 재조명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전문특화시설 등의 분류

에 익숙해져 왔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국립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대규모, 집체형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1차적 목적이 수익 발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대상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운영되는 획일적인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에게 식상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활동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70년대식 수학여행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수련활동, 수련회 등과 같은 형태로 명칭이 다르게 불리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과거 여행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새로운 환경이 주는 색다른 감이 컸지만 이제는 가족여행이 상용화되고 더 나아가서 해외여행까지도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집체화된 수련활동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본연의 목적 이외의 생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수련활동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뒤떨어진 현실감은 수련활동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체험활동까지도 부정적 성향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을 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의 명확한 지침을 스스로 세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요구되는 입학사정관제의 필요, 개인의 포트폴리오 체계구축 등을 구현하고자 에듀팟의 등장은 이전의 청소년활동과 같은 단기적이고 비체계적 활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청소년활동의 범주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의 영역으로 구분되면서 이전의 청소년활동을 수용하는 활동의 근간을 모든 영역까지 확대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시설은 공공 및 민간의 체험시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그간 약간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청소년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이 여타 프로그램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청소년시설운영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6)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부족

학교의 1차적 목적은 지·덕·체를 함양하여 균형적 성장을 모색하는 인간성의 완성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습과 지식의 전개, 체험과 인간화의 구축을 위한 인격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한 도덕적 인간의 회복 등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결국 학생의 덕성과 인간성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서 창의성을 유발시키는 교육의 가치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학교는 무엇이든 할 태세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더 학교연계, 지역사회연계, 산학연 등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교육기부 등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연계의 방침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생에게 직접적 지식과 연동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가의 여부를 최우선시 한다. 교육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내용과의 연동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분석을 이루고 있는지의 상관성은 매우 부족하다. 그만큼 연구와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하다고 한다. 얼마전만해도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초·중·고(일반고, 전문계고 등)의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과와 연동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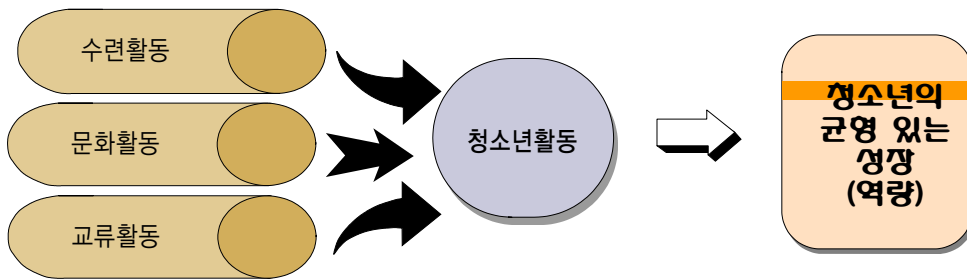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대안적 탐색은 어떠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시설의 개보수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와 대안의 탐색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초점을 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주민과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또 다른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시설의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혼재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보편적 관점에서 앞서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관운영, 조직과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적 관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여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시설운영자나 지도자의 노력이 심화되었으면 한다.

1) 청소년시설의 목적, 개념설정 및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가장 중요한 운영목적은 청소년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토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셈이다.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을 기초로 청소년을

안내하며 이들에게 21세기의 성장모델을 제공하며 유능한 인재로 자라도록 하는 기초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거나 서로를 되돌아 볼 기회는 매우 부재하다. 오늘의 현안에 묻혀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열중하거나 사업보고서의 정리 및 제출에 매몰되다 보면 청소년은 뒷전이고 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 그리고 회계정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회의감이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청소년활동을 가장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인 개념을 부과해 주는 것으로서 이를 ‘역량’(competency)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 자료: 권일남, 2011.

【그림 V-4】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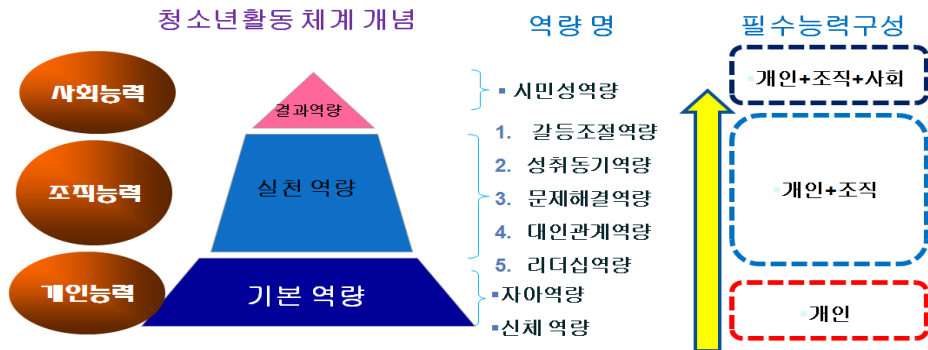
청소년기의 역량은 청소년들이 해당 시기에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모든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청소년기에 누구나 가져야 할 능력은 매우 다양하다. 문제행동을 보편화했어도 그 행동 때문에 미래에 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이와 반대의 행동을 했어도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청소년활동을 해 주는 목적은 【그림 V-5】에서와 같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능력인 역량을 갖추도록 부족함을 채우고 긍정적인 태도는 더욱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 자료: 권일남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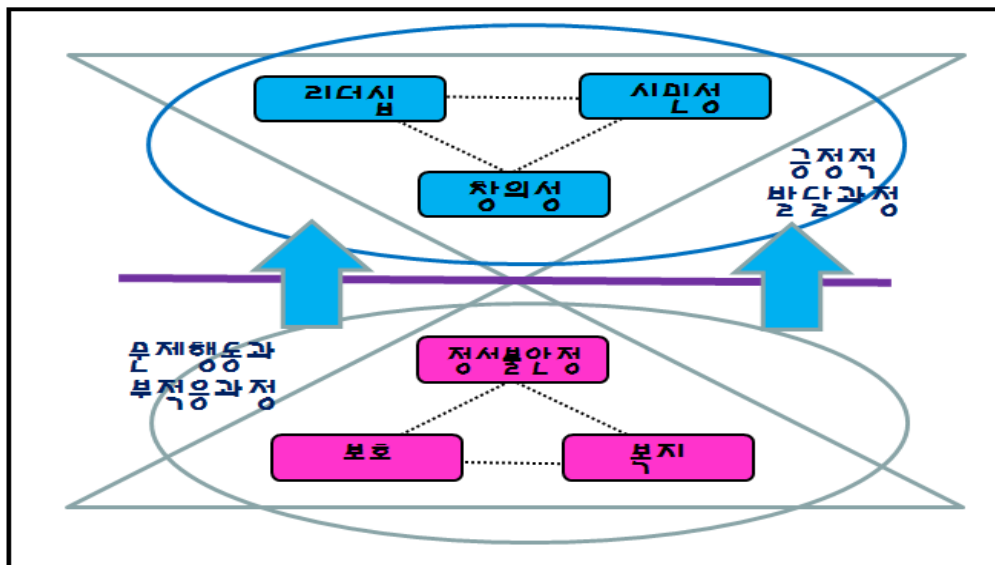
【그림 V-5】 청소년활동개념과 창의성 및 인성의 관계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져 왔었다. 지·덕·체의 관점에서 수반된 청소년활동은 수련, 문화, 교류의 법적인 개념에다 부가적으로 각종 체험활동, 인성활동 등 저마다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 왔었다.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청소년발달의 관점에서 수용되어져 온 청소년활동은 그 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이해되었지만 타인이나 이해 당사자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21세기 유용한 역량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수반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노력도 제기되어져야 할 것이며,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을 경험한 누구든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그 시기에 필요한 재능을 반드시 수반하도록 해 주어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V-6】과 같이 청소년활동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림 V-6】 청소년활동의 개념요소와 위계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언제까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성장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내면의 능력을 보완하고 이끄는 지도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V-7】과 같이 청소년의 해당 능력의 부재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회부적응청소년에게는 적응의 기제인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재능인인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더욱 계발하여 타인에게 기여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힘을 키우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활동을 통해서 수반하게 될 때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질 수 있다.



【그림 V-7】 청소년의 적응수준에 따른 활동지원 방향

2) 청소년시설운동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탐색

청소년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청소년시설운영과는 다른 상황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학교현장의 여건변화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도자의 역할을 새롭게 요청하는 단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체험활동의 요구와 함께 2012년 3월부터 전면 확대된 주5일제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수업시수를 보면 <표 V-1>에서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V-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수업시수 분석

구분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평균 연수업시간	주당 평균시간 (34주 기준)	수업일수별 일평균시간		
						170일	190일	195일
초등학교	1~2	1,408 *연평균 704	272 *연평균 136	840	25	4.9	4.4	4.3
	3~4	1,768 *연평균 884	204 *연평균 102	986	29	5.8	5.2	5.1
	5~6	1,972 *연평균 986	204 *연평균 102	1,088	32	6.4	5.7	5.6
중학교	1~3	3,060 *연평균 1,020	306 *연평균 102	1,122	33	6.6	5.9	5.8
고등학교	1~3	180단위(3,060) *연평균 1,020	24단위(408) *연평균 8단위(136)	1,156	34	6.8	6.1	5.9

* 창의적체험활동: 예)연평균 102시간은 주당 평균 3시간(34주X3시간) 편성가능

* 주당평균시간은 교과편성 34주를 기준으로 함

* 수업일수별 기준은 연간 총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자료: 김혁진, 2012.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학교별 창의적체험활동을 주당 3시간으로 편성하거나 다른 형태(월별, 학기별, 학년별 등)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부가적으로 주5일제의 확대실시,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포츠리그나 체육활동을 부가하면서 창체활동의 시수는 평균 2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시설에 큰 영향을 준 주5일제의 확대실시는 학교에 수요자 요구에 맞춘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체 9천7백 개 학교(85.5%)에서 7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2011년의 2,765교(12,431개 프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9,702교(51,069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토요 방과 후 학교는 <표 V-2>에서와 같이 운영시기별로 보면 3월 3일 6,966교(71.8%), 3월 10일 8,705교(89.7%), 3월 17일 이후 9,702교(100%)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V-2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12. 2. 24 기준)

구 분	학교현황		토요 방과 후 학교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비율)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초등학교	5,882	3,132,477	5,114(86.9)	21,548	395,300
중 학 교	3,165	1,910,572	2,773(87.6)	15,763	214,350
고등학교	2,296	1,943,804	1,815(79.1)	13,758	140,300
합 계	11,343	6,986,853	9,702(85.5%)	51,069	749,950

* ('11년) 참여 학생 수 232,040명 → ('12년) 749,950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무회의 보고자료.

오히려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을 하기에 더욱 어려워진 교육과정구조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에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업이나 민간단체, 전문예술인 또는 스포츠 활동, 과학기술인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체험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것도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의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청소년활동을 강조하고 증대시켜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게 하는 과제를 수반해야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청소년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해당사자(stakeholders)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수혜적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과 대책의 수립이 향후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시설운동을 위한 청소년시설-지역사회중심 운영전략 수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관계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의 관계만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과 지역사회의 중심운동을 수반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대상과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치구는 재정의 지원을 필두로 청소년시설의 실제적 지원을 하는 곳이니 만큼 각기 다른 명칭으로 설립되어 있는 정책부서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등의 해당 행정부서는 물론 지역복지대표협의회, 실무협의체 또는 아동과 청소년분과 등과의 참여를 조정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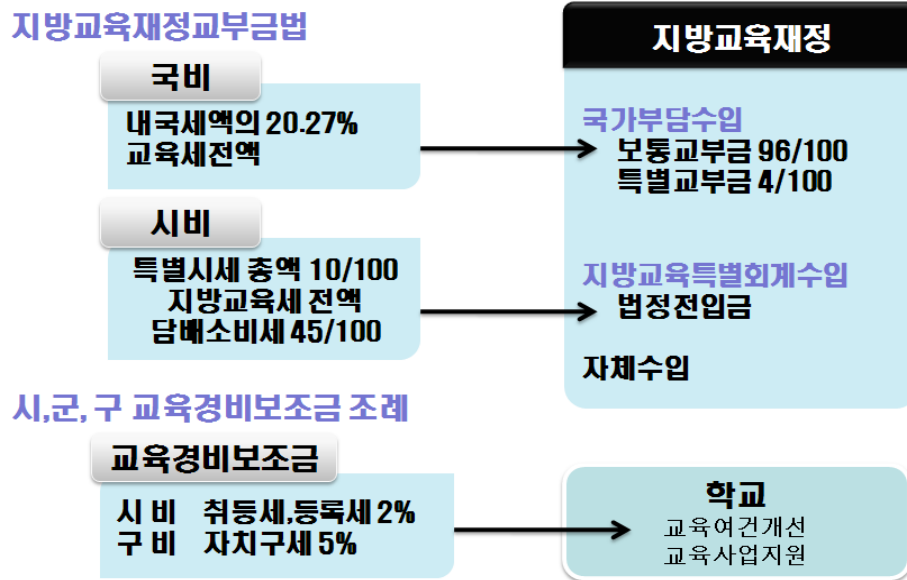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시설운영자는 지역교육청의 관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은 학교 및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되어질 때 학교의 요구는 더욱 중추적 기능이 된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청관계자, 초·중등과, 재정과 교육복지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 요구하는 학교동아리축제, 논술토론대회 등 교육청 연계활동을 개발하고 동시에 교육복지지역운영구조에도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학교를 보수적이지자 폐쇄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공간과 시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폐쇄적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폐쇄적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역청내 교과부장단과의 모임활성화, 교사모임구조에 참여하기, 교장 또는 지역유관기관장을 초청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받아 운영하는 활동프로그램의 소비지이기 때문이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친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은 복지관,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과 학부모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잘만 활용하면 이들은 청소년시설의 든든한 원군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자치구로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곳이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던 지역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청소년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예산은 【그림 V-8】과 같이 지방재정의 범주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는데 특히 이중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자료: 김정율, 미간행 자료, 2011.

【그림 V-8】 교육예산의 구성

이중 학교에서는 교육사업지원으로 각종 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체험활동, 견학 및 인성함양활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청소년시설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4) 청소년시설운영다각화를 위한 지원합리화 요구노력

청소년시설이 공공의 시설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소년시설의 세제혜택은 아직도 기부(donation)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인 및 법인이 기부금 제공시 관련법에 의해 전액 공제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의 육성, 활동, 복지 등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경우는 세제혜택이 미비한 상태(청소년단체나 관련시설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개인은 20%,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거 5%의 세제 혜택을 받음)이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청소년단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단체의 세제혜택의 개선방안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기료 20% 감면, 시·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이용시설, 수용시설 등은 수도료 20%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중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시설도 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이 이러한 주장을 당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

실제 상당수의 청소년시설이 수영장이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료, 전기료 등의 세제혜택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육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수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과제구현

오늘의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 더 나아가서 우울, 조울, 분노조절미흡 등과 같이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악화된 정신건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전문화되어 지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단지 여가시간의 체험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인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신적 압박을 벗어나 자랑스러운 미래인재로서의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일종의 삶을 조정해 주는 정거장과 같은 곳으로 시설운영자는 새로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요구는 거창하고 사회를 개혁하여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타인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회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소박한 가치를 청소년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 꿈을 이룬 청소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성장되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구현하는 곳이라는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시적으로 즐거움을 발견하여 동기를 유발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노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연계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행동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 V-9】 청소년시설의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출, 위험행동, 비행행동 등을 개선하거나 해소하는 핵심기능을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된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민간의 참여 또한 증진되는 부수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 내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인가의 역할에 달려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주5일 수업제 현황과 대책. 국무회의보고자료.
- 권일남(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 권일남(2010). 창의적체험활동의 도입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향후 활성화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권일남 외(2010).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역량진단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권일남 외(2011). 청소년활동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일남 외(2012).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권일남·김정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 [강서푸른 이학교]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 권일남·조미영(2011). 경험학습 모형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경로분석. 한국청소년연구.
- 권일남·김혁진·오해섭(2007).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2004). 효과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40호, 5-550.
- 김정율(2009).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참여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율(2011). 학교교육과정 연계의 전략적 접근방안. 서울시정책발표자료 미간행.
- 김혁진(2012).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대응방안. 오늘의 청소년 2012 5-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맹영임(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맹영임·길은배·전명기(200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박구원(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8(1), 7-24.

여성가족부(2011). 2011년 청소년백서

유연식(2001). 사회체육 경영, 관리, 행정, 정책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실태 연구. 한국사회체육 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897-914.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6). 청소년기관운영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상철(2003).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 결과분석과 대안 제시 - 남부지역 중심. 청소년학연구, 10(1), 19-44.

함병수 · 임지연 · 김종두(2003).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201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청소년수련원 · 유스호스텔-.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森豊吉 · 阿部豊(2003). 青少年教育施設の經營改革. 日常出版.

수시과제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12년 8월 27일

발 행 2012년 8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223-4(93330)